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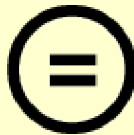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한-중 FTA의 개성공단 제품수출에 대한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on export of
products produced in Kaeseong Industrial Complex



2015년 7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 제 관 세 학 과

정 종 석

本 論文을 鄭鍾奭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유 일 선



委 員 정 홍 열



委 員 권 문 규



1945
2015年 7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 2 장 한·중 FTA의 일반현황	 6
제1절 FTA 의의	6
1. 경제통합과 FTA	6
2. FTA의 경제적 효과	8
3.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9
제2절 한·중 FTA의 배경과 추진현황	14
1. 한·중 FTA의 추진배경	14
2. 한·중 FTA의 추진상황	18
제3절 한·중 FTA 주요특징과 의의	20
1. 한·중 FTA 주요특징	20
2. 한·중 FTA 체결의 의의	27
 제 3 장 개성공단과 한중 FTA	 29
제1절 개성공단의 현황	29
1. 개성공단 추진개요	29
2. 개성공단의 운영현황과 의미	32
제2절 개성공단의 문제점	40
1.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40
2. 개성공단 수출시 문제점	41

제3절 FTA 원산지기준	44
1. FTA 원산지개요	44
2.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47
3. 원산지 결정기준	49
제4절 FTA 협정별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 규정 비교	57
1. 개성공단과 역외가공 규정	57
2. 협정별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	58
제5절 한·중 FTA와 개성공단 역외가공	64
1.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
2. 개성공단 관련 규정	66
 제 4 장 한·중 FTA의 개성공단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68
제1절 한·중 FTA 체결과 개성공단 제품 수출 분석	68
1. 한·중 FTA와 개성공단 수출	68
2. 개성공단 품목별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73
제2절 한·중 FTA에 따른 개성공단 대응방안	81
1. 한·중 FTA 체제에서의 개성공단 제품 수출 전략	81
2.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85
 제 5 장 결론	89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8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92
 ※ 참고문헌	93

표 목차

<표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9
<표2> 연도별 중국 수출입 현황	14
<표3> 중국의 FTA 체결현황(연도별)	17
<표4> 한·중국 FTA 체결일지	19
<표5> 한·중국 FTA 상품양허 결과	21
<표6> 주요 FTA 협정별 즉시 철폐 비율	22
<표7> 한·중 FTA 서비스 분야별 반영내용	25
<표8>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 추이	35
<표9> 개성공단 근로자 1인당 임금	36
<표10>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액	37
<표11> 개성공단 수출/생산비중	42
<표1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47
<표13> 역외가공 허용요건	59
<표14>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	67
<표15> 한·중 FTA 원산지 인정품목 남북 및 중국 교역현황	68
<표16>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 및 수출현황	69
<표17> 제조업 분야 대중 교역현황	70
<표18>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국가별 수출현황	72
<표19> 한·중 섬유교역 추이	74
<표20> 한·중 FTA 로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 개성공단 주요 품목	78

그림 목차

<그림 1> 개성공업지구 총개발 계획도	30
<그림 2>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33
<그림 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가동현황	35
<그림 4> 개성공업지구 입지조건	39
<그림 5> 누적조항 비즈니스 모델	84
<그림 6> 역외가공 규정 비즈니스 모델	84



A Study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on export of products produced in Kaeseong Industrial Complex

Jung, Jong-Seo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Gwon, Mun-Gyu

ABSTRACT

K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steadily developing since the cre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started June, in 2003. Today, it generates the production output of 39 million dollars per month hiring 54,000 North Korean laborers as a place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Also, it symbolizes a detente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K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a lot of advantages such as the use of the same language, geographic proximity and a quality (and affordable) labor forces in the position of southern industries could be a new breakthrough or a land of opportunities especially to souther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so, it could be the learning field of market economy in the position of northern industries and performed the role as the window of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However, a stoppage of work in 2013 demonstrates a pending decision such as a risk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 shortage of labor supply in Kaeseong Industrial Complex, restriction of carrying out for the strategic goods or frustrated exports, which are non-economic issues, to solve for the development of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mong the unsettled problems, exports by exploiting through overseas markets can be a prerequisite to activate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product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accepted as products made in North Korea so that the overseas markets are actually blocked with the tariff of the high taxation.

Especially, FTA which signed provisional contract between Korea and China on Jun, 1st, 2015, acknowledges the largest number of 310 product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South Korean products.

The number of 267 products on the FTA between Korea and EU are admitted as South Korean products. The number of 108 products and 100 products are acknowledged as South Korean products on the FTA with each India and ASEAN. On the otherhand, FTA with China acknowledges all product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South Korean products.

This study shows the effect of export to China on the product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90% of the product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occupies textile, machine metal and electric electronic.

Generally, in the position of Korea, the ratio of the Chinese imports is quite high in the field of textile or clothes. The low price products can be expected to come into Korean market and be expanded. It is expected to be suffered heavily. General machine field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especially on the construction machine part and the field of the middle and small size of daily machine can receive the benefits by contracting FTA.

Also, among these products, the products of Kaeseong Industrial Complex were conducted research for the competitiveness. Among 310 items which are acknowledged as korean products, mainly textile products, electronics or mechanical component are intensively received benefits from FTA between Korean and China. So they are expected to improve the export competitiveness with China.

So the products of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acknowledged as the Offshore processing area, which means they are acknowledged as products "made in South Korea". Therefor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establish a bridgehead to the huge mark, China and is expected to have the 2nd take-off stage.

This study comes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for tenant Companies from Kaeseong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the improvement of VAT and quality, effective business model, nurturing of experts for FTA.

Additionally, not to miss the opportunity of the second take-off by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5 plans which, are pursuing for separating principles on politics & econom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apital for Kaeseong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ng of logistics depot for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onsulting customized FTA for each companies are suggested for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is stud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이다.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12월 기준으로 125개의 남측 기업에서 5만4천여 명의 북측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¹⁾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 경제적인 이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남과 북이 상호 공동 번영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남북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험 모델의 실험장으로 자리 잡았다. 즉, 북측은 근로소득수입과 인프라 등의 직접적인 수익과 동시에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반면 남측은 언어가 통하는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용하여 생산성 증대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최초 1단계 100만평,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 등 총 2천만 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1단계 부지 중 15만평 정도에서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더욱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를 겪으면서,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요인에 따른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감소되고, 국제적인 기업신용 저하에 따른 해외 바이어 이탈 등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

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idmac.com)

고 있다.

이처럼 침체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해외 수출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원산지가 북한으로 표기되어 있다. 북한은 WTO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고관세 등 수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는 개성공단의 해외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기준, 총 11건의 FTA가 발효되고 있다. 한·칠레 FTA는 개성공단 제품 생산 이전에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이후 체결된 모든 FTA 협상과정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발효되고 있는 모든 FTA에는 개성공단 생산물품과 관련된 '역외가공'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이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개성공단으로 역외가공지역을 한정하는 방식, 당장은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는 위원회 방식,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 및 보다 포괄적인 제품군을 남한산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형태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별로 서로 다른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방식인 '역외가공'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한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입·수출국인 중국시장이 열렸다는 의미와 함께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가

장 우호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어 주목받고 있다. 한·중 FTA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이 한·중 무역의 교두보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이제 막 정식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논문은 한·중 FTA 협상추진에 따른 전략적인 고려사항이나 한·중 FTA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또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발효되고 있는 FTA와 관련한 역외가공 및 개성공단 수출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중 FTA 정식서명 이후의 실질적인 FTA 규정을 토대로 연구·발표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한·중 FTA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인 개성공단 관련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역외가공 규정과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FTA와의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가 개성공단 제품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한·중 FTA 체제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한·중 FTA 체제 하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FTA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알아본 후, 한·중 FTA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결된 FTA 협정별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원산지 인정요건 및 역외가공 규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중 FTA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특례분야 규정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품목별 중국시장 수출여건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을 동북아시아의 FTA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 FTA를 통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전략 등을 모색한다. 동시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한·중 FTA 활용극대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및 비즈니스모델 등을 연구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와 논문 자료수집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문헌비교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협정에 협정문을 토대로, 한·중

FTA와 개성공단에 관련된 학위논문, 기업보고서, 학술지,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FTA 역외가공의 이론과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관세청, 통계청, 무역협회 등 공식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과,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은 FTA의 의의 및 효과 등 FTA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한·중 FTA 추진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한·중 FTA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상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체결된 FTA 협정별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역외가공 규정과 한·중 FTA의 개성공단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성공단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 2 장 한·중 FTA의 일반현황

제 1 절 FTA 의의

1. 경제통합과 FTA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간의 동맹을 결성하여 종국적으로 동맹국들의 경제가 하나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제통합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데 첫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과 생산요소의 통합에 적용되는 시장통합이다. 두 번째는 정책통합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경제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인 부분의 통합까지 확대된다. 시장통합의 단계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단계로 나누며, 경제정책 통합은 경제동맹(Economic Union), 통화동맹(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자유무역지역은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단계로,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포함한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한 것으로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북미자유무역(NAFTA)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단계인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회원국 간에 상품은 자유롭게 거래가 되지만, 대외적으로 하나의 공동대외관세가 설정된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관세동맹 다음단계인 공동시장은 관세동맹 특성과 함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중앙아메리카 공동시

장(CACM)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의 단계를 넘어서 회원국들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대외공동관세 외에도 가맹국간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하는 통합 형태를 말한다. 경제동맹에서 각 동맹국은 공동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경제기구를 설치한다.

통화동맹은 회원국들의 통화를 고정환율로 완전히 태환되도록 하거나, 하나의 공동통화를 만들어 모든 회원국에서 통용되게 하는 단계이다. 경제통화동맹은 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의 특성을 합쳐서 통화와 거시정책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로화를 도입하여 경제통화동맹 단계에 이르렀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통합중에서 가장 초기단계이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무역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한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²⁾

세계경제는 과거에는 WTO체제하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였다. 오늘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 또는 양자주의 체제로, 회원국들 간 관세 및 규제를 철폐하고 비회원국에게는 WTO 협정범위 내에서 관세 및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4월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99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3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서비스 협정은 128건, 개도국 간 특혜협정은 15건, 관세동맹은 2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³⁾

2)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3)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포털(<http://okfta.kita.net>)

2. FTA의 경제적 효과⁴⁾

FTA체결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정태적 효과는 FTA가 직접적으로 가맹국간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이다. 동태적 효과는 FTA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본축적 등이 가맹국의 경제성장 촉진에 미치는 효과이다.

정태적 효과는 또다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로 나눌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는 관세철폐로 이전의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상품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역내 타국의 싼 상품이 수입되어 체결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가 체결전보다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는 비체결국에 대한 차별관세가 부과되어 종래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체결국으로 전환되어, 비체결국과의 무역 및 투자가 감소하고, 체결국으로 전화하는 효과를 말한다.

FTA체결의 동태적 효과는 FTA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확대효과, 경쟁촉진효과, 기술확산효과, 제도혁신효과로 나누어진다.

시장확대효과는 역내의 무역증가 및 역내 투자촉진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효과이다. 경쟁촉진효과는 역내무역으로 저렴한 상품, 서비스의 수입증가와 외국계기업의 국내시장 참여에 의해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는 효과이다. 기술확산효과는 외국계기업의 참여와 인적 이동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유입되는 효과이다. 제도혁신효과는 FTA 체결협상 등을 통하여 국내의 각종 규제가 철폐

4) 김준환, 2008, 한-미 FTA원산지 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p.17

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효과이다.

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3.2월 한-콜롬비아 FTA, 2014.4월 한-호주 FTA 그리고 2014.9월에는 한-캐나다 FTA가 정식 서명 완료되었으며, 2015. 6월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어 현재까지 총 11개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⁵⁾

<표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1건)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 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발효 (11건)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EFTA 4개국: 스위스, 노 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 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	우리의 제2위 교 역대상

5) 산업통상자원부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 효(*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3년 기준)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10.15 가서명, 2010.10.06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EU 28개 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 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 마니아, 크로아티아)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0.11.15 가서명, 2011.03월.21 서 명, 2011년 8월 1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통과, 2011.11.22 비준동의안 및 14 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 월 15일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기본 협정· 상품무 역협정)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10년 4월~2012년 3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 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 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09년 5월, 8월, 11	자원 부국 및 오 세아니아 주요시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월 / 2010년 3월, 5월 / 2013년 11월, 12월),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 선언,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4월 8일 공식서 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장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05년 7월, 9월, 11월 / 2006년 2월, 4월, 6월, 9월, 11월 / 2007년 1월, 4월, 10월, 11월 / 2008년 3월 / 2013년 11월), 2014.03.11 협상타결 선언, 2014.06.12 가서명, 2014.09.23 정식서명,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월 1일 발효	북미 선진시장
타결 (5건)	콜롬 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12월 / 2010년 3월, 6월, 10월 / 2011년 10월 / 2012년 4월), 2012년 6월 25일 협상 타결 선언, 2012년 8월 31일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 년 2월 21일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서비 스· 투자 협정)	2013년 8월~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9 월 가서명, 2015년 2월 26일 서비스 투자 협정 정식서명	유럽·중앙아 진 출 교두보
	중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우리의 제1위 교 역대상 ('13년 기준)
	뉴질 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5월)후 잠정중단,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 월, 10월),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2015.3.23 정식서명	
	베트 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2015.03.28 가서명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14.12월 기준)
협상 진행 (2건)	한중 일	2003년~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년 5월~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 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 상개시 목표” 합의,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 선언, 총 7차 례 협상 개최(2013년 3월, 7월~8월, 11월/ 2014년 3월, 9월, 11월/ 2015년 4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 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2015년 2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 ASEAN)	동아시아 경제통 합 기여
협상 재개 조성 (4건))	인도 네시 아	20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3월 28일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2년 7월, 12월 / 2013년 5월, 7월, 9월, 11월 / 2014년 2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13년 기준)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20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 역대상 (‘13년 기준)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13년 기준)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	MERCOSUR (5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MERCOSUR 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완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 (5개국)	2010년 10월 공동연구 개시,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 완료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2015

제 2 절 한·중 FTA 배경과 추진현황

1. 한·중 FTA 추진배경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표 2-2>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무역규모 2,354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2-2> 연도별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증가율(%))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계	對中	중국 수출 비중	對세계	對中	중국 수입 비중	對세계	對中
2001	1,504(△12.7)	182(△1.4)	12.1%	1,411(△12.1)	133(3.9)	9.4%	93	49
2002	1,625(8.0)	238(30.6)	14.6%	1,521(7.8)	174(30.8)	11.4%	103	64
2003	1,938(19.3)	351(47.8)	18.1%	1,788(17.6)	219(25.9)	12.3%	150	132
2004	2,538(31.0)	498(41.7)	19.6%	2,245(25.5)	296(35.0)	13.2%	294	202
2005	2,844(12.0)	619(24.4)	21.8%	2,612(16.4)	386(30.6)	14.8%	232	233
2006	3,255(14.4)	695(12.2)	21.3%	3,094(18.4)	486(25.6)	15.7%	161	209
2007	3,715(14.1)	820(18.0)	22.1%	3,568(15.3)	630(29.8)	17.7%	146	190
2008	4,220(13.6)	914(11.5)	21.7%	4,353(22.0)	769(22.1)	17.7%	△133	145
2009	3,635(△13.9)	867(△5.1)	23.9%	3,231(△25.8)	542(△29.5)	16.8%	404	325
2010	4,664(28.3)	1,168(34.8)	25.1%	4,252(31.6)	716(31.9)	16.8%	412	453
2011	5,552(19.0)	1,342(14.9)	24.2%	5,244(23.3)	864(20.8)	16.5%	308	478
2012	5,478(△1.3)	1,343(0.1)	24.5%	5,196(△0.9)	808(△6.5)	15.5%	282	535
2013	5,596(2.1)	1,458(8.6)	26.1%	5,156(△0.8)	830(2.8)	16.1%	440	628
2014	5,731(2.4)	1,453(△0.4)	25.4%	5,256(1.9)	901(8.5)	17.1%	475	5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양국 간 수출입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01년 182억 달러에서 2014년 1,453 달러로 798% 증가 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133억 달러에서 901억 달러로 677% 증가 하였다. 총수출에서 대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2.1%에서 2014년에는 1/4이 넘는 25.4%까지 증가 하였고,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7.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4 기준 17.1%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2001년 49억 달러에서 2014년 55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⁶⁾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위 수입국으로,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 저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가공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중 FTA는 중국시장의 점유율 확대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도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같은 높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환경 분야에서도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NAFTA, EU, ASEAN 등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EU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6) 2014년 對세계 무역수지 475억불을 기록하였다.

일본도 TPP가입을 통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소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FTA가 가속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동북아 지역경제의 주도권 획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중국과 FTA체결이 필요한 것이다.⁷⁾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원 획득,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FTA를 추진하여 왔으나, FTA 대상국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아세안과 일부 소국들이어서 협정체결에 따른 편익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기존 FTA 체결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점에서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의 해소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선진 기술습득 등 무역의 실질적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한·미 FTA로 양국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한국과 미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이상이고,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기기, 전자제품, 의류 등은 중국 상품과 경쟁관계이므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되고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⁸⁾

중국 측 입장에서 또 다른 배경중의 하나는 IT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3성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흑룡강의 천연자원과 요녕성의 지리적 우수성, 42개 정규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 길림성의 인제는 단순 임가공 중심의 중국경제가 하이테크기술 중심으로 바뀌

7) 전군중, 2011, 한중 FTA 협상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p.27

8) 박번순 등, 2011, 한중 FTA의의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어 가는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⁹⁾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2년 11월 연린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 이후 지속적으로 연변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다.

<표 2-3> 중국의 FTA 체결현황(연도별)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기체결 12건	홍콩	03.6월 CEPA 체결 총 8차례의 CEPA 보완협정(supplements) 체결
	마카오	03.10월 CEPA 체결 총 10차례의 CEPA 보완협정(supplements) 체결
	ASEAN	(상품) 04.11월 서명, 05.7월 발효 (서비스) 07.1월 서명, 07.7월 발효 (투자) 09.8월 서명, 10.1월 발효
	칠레	(상품) 05.11월 서명, 06.10월 발효 (서비스) 08. 4월 서명, 10.8월 발효
	파키스탄	(상품·투자) 06.11월 서명, 07.7월 발효 (서비스) 09.2월 서명, 09.10월 발효
	뉴질랜드	08.4월 서명, 08.1월 발효
	싱가포르	08.10월 서명, 09.1월 발효
	페루	09.4월 서명, 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10.4월 서명, 11.8월 발효
	대만	10.6월 ECFA 기본협정 서명, 10.9월 발효 12.8월 세관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13.6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상품 협상 진행중
	아이슬랜드	07.4월 협상 개시, 13.4월 서명
	스위스	스위스 11.1월 협상 개시, 13.7월 서명
타결 2건	한국	12.5.2 협상 개시, 15.2월 가서명
	호주	05.5월 협상 개시, 14.11월 협상 타결 선언
협상중 5건	GCC	05.4월 협상 개시, 14.1월 Action Plan 서명
	노르웨이	08.9월 협상 개시, 10.9월 제8차 협상
	SACU	04.6월 협상 개시 선언
	한중일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4.11월 제6차 협상
	RCEP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4.6월 제5차 협상
공동연구 1건	인도	RTA 공동연구 완료(03.6월~07.10월, 6차례 회의)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9) 전군중 전게서, p.30

2. 한·중 FTA 추진상황

한·중 FTA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을 합의한 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가 개시되었다. 이후 2006년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합의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0년 2월 북경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를 거쳐 2010년 5월 서울에서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이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년간의 정부 간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5월 북경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한·중 FTA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 분야별로 협상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개별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하였다. 2013년 9월 7차 협상까지 1단계를 마무리하고 그해 11월 8차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1, 2단계 합쳐 총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30개월만인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그 뒤, 한·중 양국은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기술협약(4회), 법률검토회의(3회)를 진행하였으며, 제7차 RCEP협상(2015.2.9~13)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였다. 2015년 2월 25일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하여, 한·중 FTA 가서명(영문본)을 완료하였다. 가서명된 영문본은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되어,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015년 6월1일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하였다. 앞

으로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된다.¹⁰⁾

<표 2-4> 한·중국 FTA 체결일지

구분			주요협상내용
1단계 협상	1차	'12.5.14 (中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12.7.3~5 (제주도)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12.8.22~24 (中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4차	'12.10.30~11.1 (경주)	-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5차	'13.4.26~28 (中 하얼빈)	-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6차	'13.7.2~4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13.9.3~5 (中 웨이팡)	-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1단계 협상 마무리
2단계 협상	8차	'13.11.18~22 (인천)	-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협의
	9차	'14.1.6~10 (中 시안)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 요구
	10차	'14.3.17~21 (일산)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 요구
	11차	'14.5.26~30 (中 쓰촨성)	- 상품분야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12차	'14.7.14~18 (대구)	-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방식 (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10) 관세청, 2015, 한-중 FTA 100문 100답

	13차	'14.9.22~26 (中 베이징)	-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14차	'14.11.6 (中 베이징)	-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14.11.10 (中 이징)			한-중 FTA 타결
'15.2.25			한-중 FTA 가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2015

제 3 절 한·중 FTA 주요특징과 의의

1. 한·중 FTA 주요특징¹¹⁾

1) 상품양허의 특징

한·중 FTA는 당초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서명된 협정문에서는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 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시장자유화가 달성되었다.

11)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자료

<표 2-5> 한·중국 FTA 상품양허 결과

품목군		우리나라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NT)	즉시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감 품목 (SI)	15년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I)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 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2015

특히, 한·중 FTA 상품 양허에 있어서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우리가 기존에 체결했던 협정들에 비해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한·미 FTA나 한·EU FTA의 경우 품목 수나 수입액을 불문하고 즉시 철폐 대상이 거의 70%를 상회한 것에 비해서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 품목 수 기준으로는 49.9%, 수입액 기준으로는 51.8% 수준이고, 중국은 품목 수 기준 20.1%, 수입액 기준 44%에 대해 즉시 철폐

하기로 하였다.

<표 2-6> 주요 FTA 협정별 즉시 철폐 비율

협정	우리나라		상대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한-중 FTA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한-미 FTA	9,003 (80.0%)	217.8억불(77.6%)	8,623 (82.1%)	282.8억불 (69.2%)
한-EU FTA	9,195(81.7%)	182.0억불 (66.7%)	9,252(94.0%)	318.0억불 (76.6%)
한-호주 FTA	8,940(75.2%)	111.0억불 (72.4%)	5,625(90.9%)	84.6억불 (86.3%)
한-캐나다 FTA	9,749(81.9%)	42.1억불(8 7.0%)	6,380(76.4%)	41.9억불(64.1 %)

자료 : 관세청, 2015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다음연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요 제조업 품목의 시장개방 결과를 보면, 철강의 경우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하기로 하였으며,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석유화학부분에서는 대중국 수출액이 수입액의 13배이상 큰 현실을 고려하여, 이온교환수지, 폴리우레탄 등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제품

시장의 선점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기업체의 민감 제품을 보호하였다.

섬유부분에서는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순면사, 직물제·편물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하거나 양허 제외하였다.

기계류는 2013년에 약 56억불 규모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 환경오염 저감장비 등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품인 볼 베어링 및 부분품과 전기드릴 같은 전동공구 등을 보호하였다.

자동차분야는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전략을 취하고 우리나라는 현지생산 진출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자전기 부분에 대해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동기·변압기 등 국내시장을 중장기 관세철폐함으로써 보호하도록 하였다.

생활용품에 대해서, 중국은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핸드백, 골프채 등 대중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은 장기 관세철폐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국의 전통적인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담배를 제외하고는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를 자유화 하여 냉동고기, 과일류, 채소류는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 개방하기로 하였다. 우

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하였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하였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 내 조기철폐하는 등 100% 개방하였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FTA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보호가 가능하도록 협정이 체결되면서 고품질·친환경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 원산지규정의 특징

한·중 FTA의 원산지 절차는 양국의 무역구조와 기 체결된 FTA의 원산지 절차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어 신규협정 도입에 따른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¹²⁾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규정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대체가능물품, 중립재, 세트물품, 포장재 및 운송용기 등의 다양한 특례기준이 도입되어 FTA 활용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절차 뿐만 아니라 특혜관세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이 명시되었다. 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12)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 많은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보다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스파게티볼' 효과 또는 '누들볼'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도 폭 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한·중 FTA에서는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하여 HS 6단위 기준으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이고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일 경우 원산지지위를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3) 서비스 분야의 특징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DDA(도하개발어젠다)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표 2-7> 한·중 FTA 서비스 분야별 반영내용

분야	반영 내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상하이 FTZ에 한정)
건축/ 엔지니어링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건설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 상하이 FTZ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엔터테인먼트	-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또한,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였으며,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의무, 교차 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양국 간 인적이동에 대해서는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 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단순 인력의 입국과 체류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재중 주재원의 최초 2년 주재 허용에 합의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

4) 기타분야

기타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일관성 (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 원활화·투명성 (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관세위원회(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 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공기업에 대해

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돼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관광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하고 동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여 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를 경제협력 챕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시켰다.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 한·중 FTA 체결의 의의

한·중 FTA 서명 직후 중국내 주요 언론들은 양국 간의 무역량 증가로 중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한국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들 수 있다.

첫째,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FTA 무역비중이 41%였으나, 한·중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중국·EU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

한 국가가 되어, FTA 무역비중이 63%로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본 등 주요 경쟁상대에 비해 FTA특혜관세라는 무기가 생김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게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서,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활력 넘치는 시장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발효되어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시작되게 되면 기존 부품 및 소재 이외에도 한국산에 대한 신뢰와 한류 열풍을 타고 패션과 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 대한 제1위 수입시장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셋째, 글로벌 FTA허브로서 제조업분야를 필두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중 FTA로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¹³⁾

13) 관세청, 2015, 한중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제 3 장 개성공단과 한·중 FTA

제 1 절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공단 추진개요

개성공단 사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9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접경지역 공단설립 등을 협의한 뒤 김용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공단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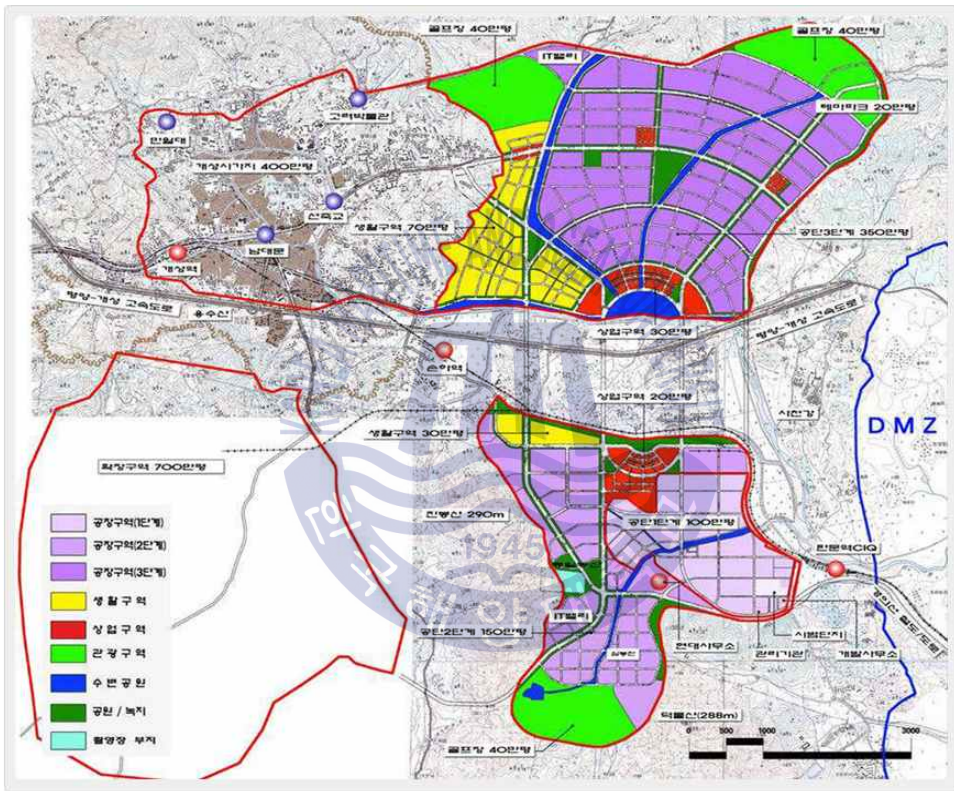
현대와 북한은 공단 후보지를 논의해오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15일) 직후인 2000년 8월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 정몽헌 현대 회장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어,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현대 및 토지공사와 북한 간에 공단개발을 위한 실무접촉을 거쳐, 2002년 11월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002년 12월 현대아산에게 개성공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50년간 사용을 보장하는 토지이용증을 발급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더 빠르게 추진되었다. 현대와 토지공사는 공장구역 조성사업 중에서 우선 1단계 330만㎡를 개발하는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개성공단은 총 3단계의 계획으로 출발하였다. 1단계를 통해 남북경협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를 통해 세계적 수출기지로 육성하며, 3단계 완료와 동시에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계획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개성시 13.2km², 확장구역 23.1km²(공단 6.6km² 포함)으로 구성된 별도계획까지 구상되었다.

<그림3-1> 개성공업지구 총개발 계획도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5

2004년 6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가 준공하기 전에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과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공하여 15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의 첫 번째 제품 반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⁴⁾

이후 2005년에는 시범단지 전력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9월에

본단지 1단계 1차(17만 m^2)에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총 생산액 1억불을 달성하였고, 2007년 5월에는 남측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본단지 1단계 2차 175만 m^2 182개 입주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출범하였다.

2008년에는 총생산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2년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성공단의 양적 성장은 사업시작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남측의 5.24조치로 대부분의 남북 경협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의 기존 입주기업은 추가 개발은 불가능하였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애초 남북한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2단계(500만 m^2 ·150만평) 및 3단계(1천160만 m^2 ·350만평) 개발을 통해 2천개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35만명을 고용해 16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전체 2천만평의 5%미만인 시범단지 100만평에서도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개발을 멈춘 상태로 신규투자 및 추가투자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3월, 자국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경고했으며, 같은 해 4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를 발표하였다. 2013년 5월에는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가 모두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13년 8월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후 가동중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성공단 국제화가 새로운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⁵⁾

14) 통일부, 2008, 개성공단 5년

15) 나승권, 홍이경, 2014,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p.22

2.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의미

1) 법 제도 운영현황

개성공업지구 법체계는 남북 간의 합의서와 남측과 북측이 각각 제정한 법률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한 합의로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협합의서와,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 등에 관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등이 있으며, 당국 간의 합의서가 개성공업지구법에 우선하고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기간 중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가동중단 재발방지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문서로 보장하기도 하였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2013년 8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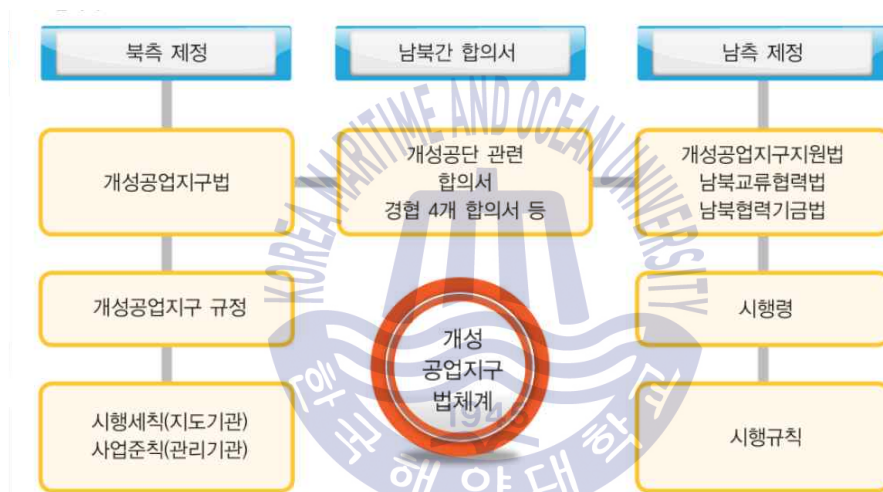
개성공업지구 관련 우리측 법률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남측 국내공단에 준하여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측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내의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남측 법률상의 기업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교역, 남북한 왕래 절차, 물품 반출입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한 관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금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공단 내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관련 법규는 46개 조항인 ‘개성공업지구법’이 기본법이고,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북측의 다른 법규의

16) 통일부, 2015, 통일백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기업창설·운영, 세금, 부동산, 출입·체류·거주 등 16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기본법과 하위규정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세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준칙은 관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등 관계기관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3-2>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5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은 2004년 10월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 이 위원회(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 KIDMC)는 개성공단 내의 기업운영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남북합작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다. 관리위원회 내에는 남측 직원과 북측 직원이 공존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 물자 반출입 업무 등 남측 기업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측 인사가 맡는 3년 임기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 위치하여, 남측 기업의 창구역할을 일임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있으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함께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남북은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동중단 재발방지, 3통·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개선, 개성공단 국제화와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후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었고,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당국 간 협의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해당 논의를 진행하며, 사무처를 개성공단 내에 상주,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기업 입주 및 생산현황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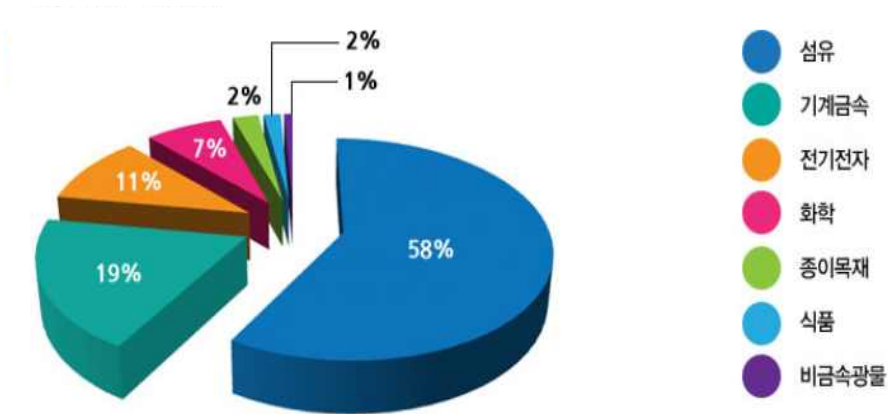
(1) 기업 입주현황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15개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생산품이 출시된 이후, 2014년 12월까지 125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별 분포로는 섬유가 73개사(58%)로 가장 많으며, 기계금속 24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 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17) 통일부, 2015, 통일백서

<그림3-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가동현황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5

북한 근로자 수는 2012년 현재 5만 명 이상이고,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고용된 이후 7년 4개월 만의 성과로, 개성공단이 국내 중소기업 공단에 버금가는 인력규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북한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는 정체되기 시작하여 2014년 12월 현재 5만 3,947명이 고용되어 있다.

<표 3-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 추이



자료 : 통일부, 2015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137.9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북측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에 의해 남북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2> 개성공단 근로자 1인당 임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동 보수	63.1	65.8	71.5	83.9	98.1	121.2	124.4
사회보험료	7.9	8.3	8.8	9.8	11.2	12.8	13.5
임금 합계	71.0	74.1	80.3	93.7	109.3	134.0	137.9

자료 : 통일부, 2014

(2) 생산현황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은 2008년 2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 3억 달러, 2011년에는 4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3년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4억 6,997만 달러로 이전수준을 빠르게 회복하였다.

누적 생산액의 경우,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 11월 5억 달러, 2010년 9월 10억 달러, 2011년 15억 달러,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파하였다. 2014년 연말 기준으로 누적생산액은 26억 6,97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각 업종별 누적 생산액은 섬유업종이 14억 9537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전기전자업종 4억 9,083만 달러, 기계·금속업종 4억 2,801만 달러, 화학업종 2억 997만 달러, 식품 2,209만 달러, 종이 목재 981만 달러이며 나머지가 1,366만 달러이다.

<표 3-3>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천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섬유	27,793	85,543	132,179	152,050	179,235	215,676	269,383	134,142	292,588
화학	10,900	18,262	21,785	26,179	32,092	28,636	30,337	16,040	23,974
기계·금속	20,853	41,947	49,250	37,312	48,637	52,617	65,861	31,653	74,628
전자·전자	14,191	39,027	47,162	37,584	59,147	97,221	93,836	33,851	67,699
식품	-	-	976	2,003	2,668	4,187	4,943	4,539	2,773
종이·목재	-	-	70	1,313	1,469	1,570	1,941	1,158	2,293
기타	-	-	-	34	75	1,941	3,199	2,401	6,010
계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469,500	223,784	469,965

자료 : 통일부, 2015

3) 개성공단의 의미

개성공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이후 2014년 12월말 누적 생산액 26억 달러에 달하고, 입주업체 및 개성공단 근로자의 증가 등 10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은 노동부분과 토지, 인센티브와 물류 부문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및 국내 공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¹⁸⁾

첫째, 노동부분에서는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평균 63.8 달러로, 우리나라 시화공단(831달러)의 1/13, 중국 칭다오공단(194달러)의 1/3,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2/3 수준이다.

둘째, 토지 이용 부분에서 개성공단의 토지가격은 1㎡당 39달러로 중국의 1/3, 베트남의 1/5, 안산의 1/16에 불과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세제상 혜택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세금우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가 폐지되어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넷째, 물류부분에서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저렴하며, 남북 간 거래에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다.

특히, 입지조건에서 보면 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에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의선 도로 및 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이나, 인천항 활용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및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될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 현대경제 연구원, 2012, U- turn to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방안

<그림3-4> 개성공업지구 입지조건



- ◆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중국 및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연결 가능(⇒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 운송루트 비교(예 : 개성-함부르크)

구분	거리	운행속도	소요기간
해상	19,000km	평균 30km/h	27일
TSR	13,000km	평균 60km/h	10일
TCR	9,000km	평균 60km/h	7일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5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 남북경제 분야의 실험장으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경제 분야 통합의 시행착오를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의 확대를 통하여 남한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출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2 절 개성공단의 문제점

1.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성공단은 앞에서 살펴본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기업 수는 당초 계획인 300개 대비 약 40% 수준인 125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2단계(150만평) 및 3단계(350만평)의 공단개발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됨으로써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개성공단이 해외공단에 비해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불안정성으로 인한 2008년 12월 1일의 통행제한조치와 2013년 4~9월의 일시 가동중단조치 등은 생산과 수출 감소, 해외 바이어 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을 지속가능한 경험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19) 현대경제연구원, 2014,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실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의 기존투자를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단절시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통행, 통신, 통관 세 가지의 3통문제와 4대 경협합의서의 미이행 등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3통은 개성공단이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도 북측의 일방적인 규정 무시와 갑작스런 변경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노동력 부족 문제이다. 개성 인근의 인력 공급은 이미 한계에 달해,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란 공단 진출의 근본적 배경과 사업의 추가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은 입주기업들의 과다 고용과 북측의 임금 인상 빌미로도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북측 근로자들의 고용과 해고, 인사 배치, 작업 지시 등 인사·노무 관리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은 북한 직장장이 갖고 있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각과 결근 등으로 생산일정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북한 근로자들의 작업·기술 교육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고급기술 인력 미확보는 생산성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개성공단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제한은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고성능, 정밀기계 제품의 반출이 제한되어 있어, 개성공단이 고부가 생산기지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이다.

2. 개성공단 수출시 문제점

현재 남북관계 경색, 3통 문제 등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은 활기를 잃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량은 2004년 시범단지 분양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개성공단 물품의 수출 비중은 2007년 21%에서 2014년 3.2%로 엄청난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지 진출 기업들도 남북관계 경색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생산애로와 판로 부족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해외 소비시장 확보이지만, 현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량의 대부분은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4> 개성공단 수출/생산비중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184,779	251,422	256,474	323,323	401,848	469,500	223,784	469,965
수출	39,669	35,845	28,600	36,677	36,867	36,393	12,093	15,310
수출비중	21.4	14.2	11.1	11.3	9.2	7.7	5.4	3.2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통일부, 2015

이러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부진은 주요국과의 원산지 문제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즉,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외국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할 경우, 북한산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적성국 규정 등으로 인하여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고세율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수출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소비시장 불황 등 내수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생산제품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개성공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물량의 소비시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중장기점 관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익모델로서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따라서,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FTA를 통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지역 특례인정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즉,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FTA 특혜관세 부여는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FTA 원산지 기준²⁰⁾

1. FTA 원산지 개요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生産地)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투자국 등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된다.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다.²¹⁾ 여기에는 국제법규부터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 등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반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FTA에서 원산지의 개념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관세특혜 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즉,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가 협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0) 이영달, 2013,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1) WC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

FTA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등 대우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관세인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역내국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FTA에서 관세특혜가 부여되는 원산지상품이란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완전생산품),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생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불완전생산품이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이 발생한 경우이다. 협정에 따라서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도 원산지상품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기도 한다.

원산지상품을 판단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 통상 '별표'로 규정된다.

일반기준은 다시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기본원칙은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품기준과 생산과정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는 불완전생산품일 경우 동 물품의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는 세번변경기준이 있

다. 또한,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과 함께 역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가공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협정에 따라 역외 산 원재료가 가공 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상품임을 인정하는 원산지재료 생산품 기준,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 등이 있다.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물품 등에 대한 특례가 있다.

품목별기준의 경우 다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뉜다. 공통기준은 특정 품목군에 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준표에서 ‘부’, ‘류’, 등의 ‘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예: 한·아세한, 한·인도 FTA)이다. 셋째,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예 : 한·칠레 FTA).

개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별로 정해지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에 기반한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주를 이룬다. 이들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합기준, 규정된 복수의 기준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있다.

<표 3-5>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일반기준 (총칙)	기본원칙	-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역내가공 + 충분가공 원칙 - 원산지재료생산품 - 직접운송원칙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 세트물품
품목별기준 (각칙)	공통기준	- 일반주 -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자료 : 관세청, 2015

한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 규정은 협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과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 있다. 만약 국내법이 협정과 다르면 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2. 특혜관세 적용 전제 조건

1) 거래당사자 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거래당사자 요건이 있다. FTA에서 거래당사자는 보편적으로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수출자’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

는 해외 공급자와는 달리 규정되고 있다.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세관 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3국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출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품목 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은 품목요건이다. 특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품목도 협정별·국가별·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3) 원산지상품 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세 번째 전제조건은 원산지상품요건이다. 동 요건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이 특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네 번째 전제조건은 운송요건이다. 운송요건은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규정 형식은 FTA에 따라 직접운송요건을 두면서 그 예외로 비체약국 경유 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유럽형)가 있고, 직접

운송요건은 두지 않고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미주형)하여 전자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1) 일반기준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론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산업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천연상품·광산물·농수산물에 많고, 공산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며, 농수산물도 채배, 사육, 양식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산품의 경우에는 재료조달 또는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해 완전생산품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예외도 존재하고 있다.²²⁾

따라서 완전생산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외산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원산지불명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생산과정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역내에서 나고 자란 양의 털로 짠 직물, 역내에서 자고나란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치즈

협정별로 보면, 완전생산품을 EFTA, 아세안, 인도, EU와의 FTA에서는 당사국의 영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와의 FTA에서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 ① 광물성 생산물
- ② 재배, 수확한 식물성 생산물
- ③ 출생 및 사육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④ 역내 선박(역내 국가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 바다에서 획득한 수산물 및 그 가공물품
- ⑤ 해저 탐사권이 있는 역내인이 역외 해저에서 채취한 물품
- ⑥ 역내 국가 또는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EFTA, EU, 인도와의 협정에는 이 규정이 없음)
- ⑦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⑧ 역내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 ⑨ 역내 국가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① 내지 ⑧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이다.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완전생산품은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영해의 범위와 선박의 자격요건이 협정별로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 역내생산기준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결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 기본원칙이다. 완전생산품의 경우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상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불완전생산품이나 원산지재료 상품인 경우도 생산은 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동 원칙은 각 협정의 ‘원산지상품’ 및 ‘영역원칙’ 규정에서 천명하고 있으며, ‘역외생산 금지원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생산업체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충분가공기준

역외국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충분가공원칙이다.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란 추상적으로는 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각 협정은 ‘품목별기준’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공정,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공정이라고 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변형이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세번이 변경되어도 실질이 변하지 않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실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충분가공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역내에서 단순가공만 이루어진 경우 특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며, 이는 협상단계에서 원산지기준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고, 품목별기준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4) 실질적 변형기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되는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 결정은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불완전생산품의 실질적변형 판정은 세번변경기기준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주요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각 기준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물품의 특성별로 선택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5) 원산지결정의 보충기준

가. 누적기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이라고 하며, 투입요소 측면과 지역적인 범위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되고 있다. 또한 투입요소는 재료와 공정의 누적이 허용되고 있다.

누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나눌 수 있다. 양국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양쪽 다 1개국인 경우 1+1 방식으로 상호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다국누적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 1+n 또는 n+n 방식으로 누적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 최소허용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원산지인정의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이라고도 한다.

미미한 재료의 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는 일반품목에 비하여 허용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농수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최소허용기준의 허용을 최소화 한다.

다. 중간재

중간재는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비 계상기준을 완화하여 특혜대상물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재를 생산하는 자가생산자를 외부조달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라. 대체가능물품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고 한다.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되며, 이규정에 의하여 재고관리 또는 원산지결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마. 간접재료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중

립요소라고도 한다.

원산지 결정시 간접재료는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으므로 세번 변경기준 적용 시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키게 된다.

바.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원재료, 부품 등) 각각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가 본체인 기계 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체인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본체인 기계 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사. 소매용 포장·용기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악기나 면도기 케이스 등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제외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내용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를 결정하지만, 부가가치기준 품목의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아. 세트물품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의미하며, 세트물품도 구성품별로 원산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트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품목별 기준

(1)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역내 생산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수준이상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번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S)에 따라 특정 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하며, HS code로도 불린다. HS 품목분류체계는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며,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제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FTA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하지만, HS 품목분류체계상 상당히 가공되었지만, 동일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세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가 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보통 6단위, 4단위, 2단위 기준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단위수가 커질수록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6단위, 중간 수준인 경우 4단위, 약한 품목은 2단위 기준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종류로서 역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 비율을 정할 때는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과 같이 규정하는 RVC방식(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또는 “특정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MC방식(import Contents Method)이 사용된다.

부가가치비율은 협정에 따라 통상 30%~60%로 다양하게 정해지는데, RVC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MC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원산지 인정이 까다롭다. 부가가치기준은 기준이 간단하고 명료하여 FTA에서 협상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상품과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의 가격, 제조경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적용이 복잡하다. 또한 상품 또는 재료가격의 등락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원산지변동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기준 산출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VC법과 MC법이 있으며, RVC법은 다시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으로 나뉜다.

(3)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별기준의 한 종류로서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공정기준은 특정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라고 규정하는 적극적 방식과, 특정공정이 행해진 것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방식이 무역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지만,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소극적 방식을 일반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적 방식으로 일정한 공정을 규정하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충하는 한정적 기준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규정의 대표적 가공공정 기준 적용품목은 섬유 또는 의류제품이며, 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에서도 일부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 4 절 FTA 협정별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 규정 비교

1. 개성공단과 역외가공 규정²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의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목별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같이 국토면적이 매우 좁아서 모든 생산이 한 국가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나, 최종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경우, 일정조건하에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가공을 인정할 경우 역외로 반출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내부가가치로 계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역외로 수출되었다가 일정부분 가공을 거쳐 재수입된 물품의 가격 전체가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계산되므로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23)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개성공단제품 FTA 원산지제도 안내, 2011

또한, 재료비 비중을 판정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재료를 반출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을 거쳐 반제품의 형태로 수입하였을 때, 역외가공을 인정할 경우에는 초기에 국내에서 반출한 재료비(재료비+운송비 등)를 역내산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된 반제품에 국내산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제품 가격 전체(반제품 가격+운송비 등)을 역외산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인 경우에도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은 기존의 차별적인 고세율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어 수출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개성공단 제품에 역외가공이 인정될 경우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무관세 반출입, 저렴한 인건비, 신속한 운송 등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제품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함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증가가 기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개성공단 수출확대를 위하여 역외가공 조항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 협정별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

2015년 현재 발효 중인 11개국과의 FTA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이전에 체결된 칠레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정에 역외가공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특례조항의 내용은 협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역외가공이 허용되는 지역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있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역외가공대상지역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요건²⁴⁾

<표 3-6>과 같이 협정별로 역외가공 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는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후 논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품목제한의 경우,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는 특정품목 역외가공만 허용하고 있으며, EFTA는 품목 제한 없이 적용하는 일반 역외가공과 특정품목 역외가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E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모두 허용되지만, 아세안, 인도, 페루와의 FTA는 개성공단 생산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표 3-6> 역외가공 허용요건

구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허용여부		○		○		○	○	○	×
허용요건	지역	개성공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성공단	개성공단	개성공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품목	4,625	134	제한없음	267품목	국가별 100품목	108	100	
	가공비	한국에서 수출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24) 이영달 전게서

근거규정	제4.3조 및 부속서 4B	제4.4조 및 부속서 4C	부속서 I 제13조 및 부록 4 제1조 외	부속서 I 제13조 및 부록 4 제2조 외	부속서 3 제6조 및 양해각서	제3.14조 및 부속서 3-나	제3.15조 및 부속서 3-나	
------	-------------------------	-------------------------	-------------------------------------	-------------------------------------	------------------------	---------------------------	---------------------------	--

자료 : 관세청, 2015

2) 협정별 역외가공 기준

(1)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첫번째 FTA로, 역외가공은 크게 개성공단 역외가공과 특정품목 역외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의 근거규정은 협정 제4.3조 1호 및 2호에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료가 된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및 한반도 내의 공업 지역에서 가공된 4,625개의 품목(HS 6단위)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싱가포르로 수출되고,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제44조 및 부속서 4C에는 특정품목의 역외가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측 선정 134개 품목(10단위 기준)에 대해서 가공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산을 인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개성공단을 최초로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선례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

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부터 이미 북한산 제품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개성공단엔 미치는 효과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2) 한-EFTA FTA

한-EFTA FTA에서는 부속서 I의 부록4, 제1항에 의하여 공장인도가격 기준으로 역외가공 비용이 10%이하이며, 당사국에서 역외로 수출된 재료가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치는 물품이고, 원산지 신고서에 ‘부속서 I의 부록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고, 수출에서 수입까지의 전 과정이 충분히 입증 될 경우에는 대상품목 및 가공지역의 제한 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267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 가치’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이하이고, 당사국에서 수출된 원산지재료 가치가 재수입 재료비의 60%이상일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공지역에 상관 없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3)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 협정 본문이 아닌 별도의 양해각서를 통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은 비원산지 투입 총 가치가 완제품 FOB 가격의 40%이하이고, 일방 당사국 재료의 총 가치가 완제품 생산에 이용된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하지만, 원산지 인정 대상품목은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품목(HS 6단위)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별로 허용품목이 동일하지 않아서 실제로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4) 한·인도, 한·페루 FTA

한·인도 FTA와 한·페루 FTA도 한·아세안 FTA와 같이 개성공단에 한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한·인도 FTA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이 완제품 FOB 가격의 40%이하이고, 재수입 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전체 재료비의 60%이상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는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적용 대상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한·인도 FTA는 108개 품목, 한·페루 FTA는 100개 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5) 한·EU,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FTA

유럽연합(EU), 미국과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 체결한 FTA는 소위 ‘위원회 방식’으로 현재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역외가공 허용여부에 대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요건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참고하여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대 관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실질적으로 FTA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기존 발효된 FTA에 따른 개성공단 역외규정 평가

지금까지 발효된 FTA 중에서 싱가포르와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등은 지정된 품목리스트를 제시하고 그에 한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EU와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은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가공지역과 충족기준,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FTA를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 조항 활용의 경우, 한·아세안, 인도, 페루, EFTA는 협정문에 100~200개 정도의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FTA 규정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들 수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우 대부분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들이 복잡한 FTA 역외가공기준에 맞추어서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와 같이 국가별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협약국의 규정에 맞추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개성공단 제품이 FTA를 통한 수출부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한·중 FTA와 개성공단 역외가공

1. 품목별 원산지 규정²⁵⁾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해 왔던 협정들에 비해 가공공정기준이나 특정 형태로 규정하기 복잡한 기타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포함되지 않고 상당히 간결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측은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중국측이 제안한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하였다.

품목군별로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의 경우 HS 6단위 기준 전체 640개의 품목에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을 적용하여 비체약국 물품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공농수축산물(HS WP 15류~제24류)의 경우에는 HS 6단위 259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공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나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등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높은 수준의 가공이 요구되거나 제조·가공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Heading)이 적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류에 대한 對중국 수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공업제품이나 기계류 등의 경우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

25) 관세청, FTA TRADE REPORT, 2015년 4월호

재료 선택의 폭은 넓히면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은 비교적 용이하게 설정하여 對중국 수출에 대한 편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유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하고 세분화가 가능한 기준들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HS 6단위 전체 5,205개 세번 중 3,107개 세번에 대해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류(2단위), 호(4단위), 소호(6단위)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재로 중 일부가 원산지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제외 세번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중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 3,107개 품목 중 투입원재료의 일부가 원산지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전체의 4.1%인 127개 품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에는 원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만 수행하면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료의 선택 폭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한·중 FTA에서는 공제법(BD : Build-Down)을 기준으로 당사국 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전체 5,205개 품목 중 3.1%인 161개 품목에 불과하고 적용되는 품목군도 4개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군의 특징은 대부분 품목군이 원부자재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의한 일반적인 기계류나 자동차류이다. 기초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HS 제16류(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도 포함된다. HS 제16류 중에서도 육류를 원재료로 하는 물품과 일부 수생 무척추동

물의 추출물과 즙의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나 수생생물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 개성공단 관련 규정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한·중 FTA의 가장 큰 특징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310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 270개 외에, 앞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40개 품목을 추가한 것으로 역대 FTA 중 가장 개성공단에 우호적인 것을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
-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이상

이 조건은 기존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해당 부분만큼 기체결한 FTA 규정에 비해 유리하며,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비원산지 투입요소 상승문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역외가공지역은 협정 발효 전에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가동되고 있는 공업지구로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개성공단에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개성공단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양측은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OP"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7>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자료 : 관세청, 2015

제 4 장 한·중 FTA의 개성공단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제 1 절 한·중 FTA 체결과 개성공단 제품 수출 영향

1. 한·중 FTA와 개성공단 수출

현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23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중 FTA의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품목인 310개 품목의 대중국 교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 규모이고, 이중 수출은 492억 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원산지 인정 310개 품목의 대중국 교역액과 개성공단 반출입 교역액의 2014년도 차액은 776억 달러로 향후 한중 FTA를 통하여 개성공단이 활성화 될 경우, 310개 품목에 대한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776억 달러만큼 성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한·중 FTA 원산지 인정품목 남북 및 중국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10개 품목 대중국 수출	23,319,820	34,107,832	33,480,400	35,845,968	44,955,912	49,170,472
개성공단 반입	417,935	705,268	908,935	1,073,109	614,649	1,205,771
개성공단 반출	17,187,572	21,915,384	25,116,380	24,544,490	26,648,000	30,815,976
310개 품목 대중국 수입	522,617	737,588	788,698	888,086	517,524	1,132,038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10개 무역액	40,507,392	56,023,216	58,596,780	60,390,456	71,603,912	79,986,448
개성공단교역액	940,552	1,442,856	1,697,632	1,961,195	1,132,174	2,337,809
대중교역 개성공단 교역차액	39,566,840	54,580,360	56,899,148	58,429,261	70,471,738	77,648,639

자료 : 최남석, 한중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2015

품목별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사의 절반이상인 73개사가 섬유관련 업체이며, 2014년 12월 말 기준 각 업종별 누적 생산액도 섬유업종이 14억 9537만 달러, 전기전자업종 4억 9,083만 달러, 기계·금속업종 4억 2,801만 달러 순으로, 개성공단의 가장 큰 생산품은 섬유업종이다.

<표 4-2>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섬유	생산	152,050	179,235	215,676	269,383	134,142
	수출	0	0	218	210	390
화학	생산	26,179	32,092	28,636	30,337	16,040
	수출	5,816	7,839	3,266	2,936	710
기계· 금속	생산	37,312	48,637	52,617	65,861	31,653
	수출	19,840	23,647	25,369	27,012	10,393
전기· 전자	생산	37,584	59,147	97,221	93,836	33,851
	수출	2,861	5,166	7,621	5,564	358
식품	생산	2,003	2,668	4,187	4,943	4,539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83	25	382	398	75
종이· 목재	생산	1,313	1,469	1,570	1,941	1,158
	수출	0	0	11	0	4
기타	생산	34	75	1,941	3,199	2,401
	수출	0	0	273	48	163
계	생산	256,475	323,323	401,848	469,500	223,784
	수출	28,600	36,677	37,140	36,168	12,093

자료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4

하지만, <표 4-2>와 같이 지금까지 개성공단 제품 수출품은 70% 이상이 기계금속이었으며, 그 외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순이었다. 섬유의 경우는 약 0.6% 만이 수출되어 전체생산품에 대한 수출은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중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섬유제품의 전체 수출 비중은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對중국 수출비중은 15.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섬유류가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받게 될 경우 전 세계 수출뿐만 아니라 對중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제조업 분야 對중국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14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공산품 (총계)	세계	1,057,907	565,718	492,189	73,529
	對中	229,462	144,211	85,251	58,960
	(비중)	(21.7)	(25.5)	(17.3)	
광산물	세계	251,040	55,161	195,879	△140,718

구분		2014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對中	9,365	7,339	2,026	5,313
	(비중)	(3.7)	(13.3)	(1.0)	
화학 공업제품	세계	123,692	71,068	52,624	18,444
	對中	37,735	27,634	10,101	17,533
	(비중)	(30.5)	(38.9)	(19.2)	
플라스틱, 고무, 가죽	세계	24,071	15,578	8,493	7,085
	對中	4,879	3,276	1,603	1,673
	(비중)	(20.3)	(21.0)	(18.9)	
섬유	세계	30,594	15,939	14,655	1,284
	對中	9,108	2,515	6,593	△4,078
	(비중)	(29.8)	(15.8)	(45.0)	
생활 용품	세계	11,616	3,529	8,087	△4,558
	對中	4,812	693	4,119	△3,426
	(비중)	(41.4)	(19.6)	(50.9)	
철강 금속	세계	93,591	46,874	46,717	157
	對中	21,945	7,530	14,415	△6,885
	(비중)	(23.4)	(16.1)	(30.9)	
기계류	세계	239,002	171,849	67,153	104,696
	對中	31,023	22,186	8,837	13,349
	(비중)	(13.0)	(12.9)	(13.2)	
전자 전기	세계	280,323	183,947	96,376	87,571
	對中	110,163	72,906	37,257	35,649
	(비중)	(39.3)	(39.6)	(38.7)	
잡제품	세계	3,978	1,773	2,205	△432
	對中	432	132	300	△168
	(비중)	(10.9)	(7.4)	(13.6)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1단위 기준), 2015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호주, 유럽, 러시아, 중동 순으로 중국의 경우는 전체 6.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호주와 유럽의 경우는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FTA에 따른 수출효과는 미미한 편이지만, 한·중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모두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향후 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4,270 (14.9)	6,267 (17.1)	1,573 (4.3)	1,343 (3.7)	748 (6.2)
일본	547 (1.9)	495 (1.4)	888 (2.4)	877 (2.4)	60 (0.5)
호주	10,426 (36.5)	12,069 (32.9)	13,382 (36.3)	16,271 (44.7)	5,436 (45.0)
중동	2,826 (9.9)	3,475 (9.5)	3,803 (10.3)	3,511 (9.7)	1,735 (14.3)
러시아	3,765 (13.2)	4,629 (12.6)	4,795 (13.0)	4,407 (12.1)	1,885 (15.6)
유럽	4,504 (15.8)	5,289 (14.4)	5,433 (14.7)	5,051 (13.9)	2,135 (17.6)
기타	2,262 (7.9)	4,453 (12.1)	6,993 (19.0)	4,933 (13.6)	94 (0.8)
합계	28,600 (100.0)	36,677 (100.0)	36,867 (100.0)	36,393 (100.0)	12,093 (100.0)

자료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14

2. 개성공단 품목별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은 2014년 기준, 섬유(62.3%), 기계·금속(15.9%), 전기·전자(14.4%) 순으로 상위 3개 품목이 전체생산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3가지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한·중 FTA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섬유분야(신발, 의류 포함)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의 2/3을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섬유산업의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원료·사·직물·염색·의류·제조·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고용창출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이다. 섬유수출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섬유소재 수출 세계 5위, 의류수출 세계 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섬유 기술력 세계 4위로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14년 27억 달러)에 이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14년 25억 달러), 대중국 섬유무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대중국 섬유수출은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25억불, 수입은 의류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65억 9,300만 달러를 기록해 대중국 섬유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인 40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4-5> 한·중 섬유교역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0	2002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2,653	2,454	2,745	2,990	2,725	2,730	2,515
전년비	20.1	3.0	20.5	8.9	-8.8	0.2	-7.9
수입	2,018	2,862	5,378	6,529	5,830	6,322	6,593
전년비	38.7	30.4	30.9	21.4	-10.7	8.4	4.3
무역수지	635	-408	-2,633	-3,539	-3,105	-3,592	-4,078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5

중국은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섬유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에 있다.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한·중 FTA는 섬유분야의 취약한 대중국 경쟁력을 반영하여 전체 12,232개 품목 중 농수산물 670개(5.5%), 공산품 290개(2.4%), 총 960개 품목에 대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섬유분야 초민감 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였으나, 섬유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로 양허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對중 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견·마 등) 및 국내 대량 생산이 어려운 분야(자켓·코트류, 스웨터류)를 중심으로 개방하였다.²⁶⁾

한·중 FTA에 따라 8~20% 내외에 이르는 섬유 및 의류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저가 범용 섬유, 의류제품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국내 섬유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용 섬유 및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가 예상되어 이러한 타격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고, 국내에서 만든 의류를 수출할 때 관세도 축소되기 때문에,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개성공단에서 가공 후, 한·중 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개성공단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높아져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류제품의 원산지 결정방식은 세번분류(HS 2단위)의 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을 따르고 있어,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하거나 수출할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 가장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섬유, 의류 업체들에게는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섬유 및 의류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FTA의 영향은 중저가 중국산 제품들의 국내 수입확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진출을 확대할 경우, 남북간 반출입에 따른 무관세 적용과 개성공단의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비용, 중국의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입게 되어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로 개성공단 섬유, 의류 업체들에게는 개성공단 역외가공의 수혜가 되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가서명 자료

2) 기계금속 분야

기계금속 분야 중 자동차·부품분야는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되어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국 모두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국은 승용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을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하였다. 우리나라는 승용차를 포함하여,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 하였으며, 對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시장을 보호 하였다.

일반기계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6.9%이며, 중국은 약 9%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광학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이며, 수입은 기계요소, 공구 등 저가품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하여 고품질 기계의 중국수출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가격이 낮고 사양이 떨어지는 중국산 기계부품, 공구 등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 역시 관세율 하락과,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전기전자 분야

전자전기 분야의 평균 관세율은 중국 8.4%, 우리 5.2%로 중국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ITA²⁷⁾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로 통관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냉장고, 세탁기의 관세를

27)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WTO 회원국간 IT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한 협정으로 IT품목(HS6단위 203개)을 무관세화

철폐하고, 중국은 냉장고, 에어컨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20년 내에 축전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대형 가전분야의 FTA 효과는 당장은 미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한 중국 측 시장 개방을 확보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전기전자 제품 역시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인하여 한층 더 혜택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전체적인 평가

한·중 FTA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전체적으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따라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고 중국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국내 내수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산 중저가제품 유입으로 매출이 위축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역수출인 늘어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중저가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및 의류 분야는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저가제품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이 예상된다. 일반기계 분야는 공작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중소형 생활가전 분야도 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관련 한국산 인정대상인 310개 품목 중 주로 섬유제품과 전자 및 기계 부품이 한·중 FTA의 집중적인 수혜품목으로 나타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거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교두보가 확보돼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높아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4-6> 한·중 FTA로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 개성공단 주요 품목
(단위 : %)

발표즉시 철폐되는 품목	현관세율
견사(견사웨이스트로만든 견방사, 소매용 제외)	6.0
합성필라멘트재봉사(소매용)	5.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양모·섬수모와 혼방한 실	5.0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제 포장용 끈	5.0
액체펌프의 부분품	5.0
냉장, 냉동 설비용 압축기 기타부분품	8.0
공업용 집진기용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농업용 집진기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기타 액체용·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부품	5.0
합성필라멘트 재봉사(소매용)	5.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냉장, 냉동 설비용 압축기 기타부품	8.0
여과기·청정기(부품포함)	5.0
5년 후 철폐되는 품목	현관세율
가죽의류	10.0
면제의 티셔츠(편물제)	14.0
유리제의 광학소자	10.0
철강 구조물·부품	4.0

기타 철강제품	8.0
정전기 여과기와 청정기	5.0
전동기·발전기 등 부품	8.0
전환 반도체 모듈	10.0
10년 후 철폐되는 품목	현관세율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	6.5
플라스틱제 사무용품·학용품	10.0
면제 남성용 바지·셔츠(편물제)	16.0
합성섬유제 남성용 바지(편물제)	17.5
합성섬유제 여성용 재킷·블레이저	19.0
면제의 여성용 드레스·스커트·바지	16.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셔츠(편물제)	17.5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블라우스·셔츠	17.5
유아용 의류(면제·합성섬유제)	14.0
시계용 유리	17.5
편광용 안경유리	18.0
스테인레스강제의 주방용품	12.0
철강제 공업용 주물제품	10.5
알루미늄제 기타 제품	15.0
비금속 자물쇠(디지털 도어록 등)	14.0
중앙난방용 보일러 부품	6.0
이산화탄소 압축기	7.0
창형·벽형 공기조절기	15.0
냉장기거나 열펌프의 부품	1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10.0
로터리스크린 직물날염기	10.0
디지털인쇄기의 보조기기	12.0
열감응 인쇄헤드	6.0
방전등이나 방전관용의 안정기	10.0
저장식·즉시식 전기 물가열기	10.0
헤어드라이어	10.0
무전기 부품	8.0
카메라 모듈 부품	12.0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부품	15.0
비금속제의 휴대용 시계 케이스	14.0
골프공·탁구공을 제외한 모든 공	12.0
볼펜	15.0
위생타올(패드), 탐폰	10.0
15년 후 철폐되는 품목	현 관세율
가죽장갑(운동용·기타)	20.0
메리야스나 뜨개질 모자	20.0
사이클론	5.0
내연기관 공기정화기	5.0
평압 스크린 인쇄기	10.0
직류 정지형 변환기	7.0
무정전 전원장치	10.0
인버터	1.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0

자동차용 유리창 레이저·헤드오퍼레이티드 선루프	10.0
컬러필터	8.0
20년 후 철폐되는 품목	현관세율
모피의류	23.0
편물제 남성용 슈트(천연소재)	25.0
편물제 남성용 슈트(합성섬유제)	25.0
비금속 걸쇠·버클·구슬(부품 포함)	10.0
가정용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25.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10.0
자동차 차체(옆면·전면·뒷자석·후미)문짝·보닛·발판·기타부품	10.0
모터사이클 부품	30.0
연필과 크레용	21.0

자료 : 한국경제신문,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 2 절 한·중 FTA에 따른 개성공단 대응방안

1. 한·중 FTA 체제에서의 개성공단 제품 수출 전략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와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향후 對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중 FTA를 100%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중국시장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인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한다.

1) 개성공단 제품의 브랜드화

한·중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저렴한 제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으로써, 섬유·의류 업체들의 대부분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아직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에 대한 인지도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광고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개성공단 자체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성공단 기업들 간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독자브랜드가 없어 마케팅과 성장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브랜드의 필요성이 높은 섬유, 가죽, 가방, 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출시할 경우 개성공단 제품의 부가가치와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개성공단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 4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7곳이 합작해 론칭한 공동 패션브랜드 ‘시스브로’²⁸⁾는 앞으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화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2)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품질 강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한·중 FTA를 통한 관세철폐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함께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이다.

28)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남녀 속옷, 드레스셔츠, 남성 자켓, 청바지, 양말, 레저용 신발, 골프 웨어 등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14개 업체가 참여

즉,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은 중국 시장 진출 시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평가나 인증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EO²⁹⁾제도의 경우, 중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동일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AEO 인증 자체가 기업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증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개성공단 업체들이 한·중 FTA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즉, 개성공단 수출업체가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한·중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 2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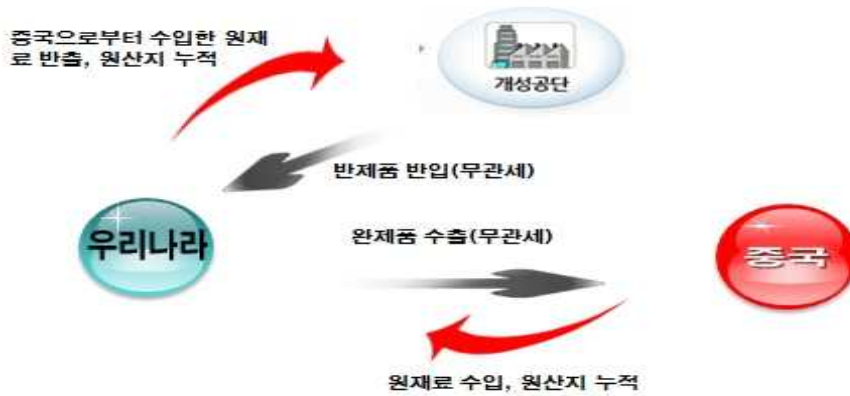
(1) 누적조항 이용 모델

한·중 FTA에서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개성공단에서 반제품 등으로 가공한 후 국내로 무관세로 반입, 우리나라에서 최종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관세혜택이 가능하다.

29)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하며, 인증될 경우 검사 및 절차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4-1> 누적조항 비즈니스 모델



자료 : 관세청, 2015

(2)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한 모델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일정 조건하(국산재료비 60% 이상)에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한국산 원재료를 이용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반제품 등을 무관세로 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으로 최종가공하여 중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그림 4-2> 역외가공 규정 비즈니스 모델



자료 : 관세청, 2015

4) 기업의 FTA 전문인재 양성

지금까지의 FTA에 비해 한·중 FTA는 원산지기준 충족조건이 완화된 편이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국내외 조달 부품 및 원자재 각각에 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품목분류, 생산원가, 역내 부가가치 등을 산출하여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한·중 FTA 혜택을 향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FTA 핵심 전문인력을 두어서, FTA 전문인재로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관세청의 FTA 전문인력양성 과정 등 정부기관 및 대학에서 기업의 FTA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기업실정에 맞추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1) 개성공단의 정제외적인 불안요인 최소화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양질의 노동력, 의사소통의 자유로움, 제로에 가까운 이직률 등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모처럼 개성공단에 찾아온 기회인 한·중 FTA를 잘 살리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한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한다. 즉 정치·군사적 요인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성공단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손상되고, 입주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제공단의 이미지 보다는 북한이라는 폐쇄지역에 있는 분단지역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신뢰는 많이 상실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성공단의 성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여 외국 투자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을 유치할 경우 남북관계 부침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는 개성공단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성공단의 확대

개성공단의 남북관계의 상징성과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개척과 관련 산업의 파급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1단계 내에서 가동 중인 업체는 125개 업체지만, 이들 업체에 원부자재 공급 등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체는 이보다 몇 십배 이상이며, 물류산업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의 생산과 고용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단계 개발에 멈춰있는 개성공단을 앞으로 개발초기에 제시된 2~3단계까지 확대하여, 현재의 섬유업종 중심의 공단에서, 첨단·고부가가

치 공업단지로 육성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성공단 이외에도 역외가공지역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여 제2의 개성공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나진선봉 등 북한 내 또 다른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개성공단 발전은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 경제협력 촉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개성공단 전용 물류기지 신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배후 물류지원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물류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원부자재를 반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듯이, 개성공단의 배후 물류단지 건설은 개성공단기업들의 숙원사업이다.

개성공단 물류기지는 개성과 인접한 남한지역에 건설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기능 이외에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도 가능한 복합 물류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개성공단의 판로개척은 물론,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성공단 기업들의 FTA 컨설팅 강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임을 감안하여 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한 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별 1:1 맞춤형 FTA 컨설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FTA 성공사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기업 밀착 컨설팅을 통

해 개성공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로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과 개성공단 수출기업들과의 일자리 연결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을 FTA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첫 삽을 뜬 지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였다. 오늘날 월 생산액 3천9백만 달러, 북한 근로자 5만4천명이 일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현장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단으로 자리 잡았다.

남측 기업들 입장에서는 동일할 언어사용, 지리적 근접성,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의 강점을 지닌 개성공단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게는 새로운 돌파구이자 기회와 땅이 되었다. 북한측 입장에서든 시장경제 학습의 장일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가동 중단 사태가 보여주듯이 경제외적인 문제인 '한반도 리스크'와 법·제도적인 장치 미흡, 개성공단 노동력 공급 부족, 개성공단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제한, 수출부진 등은 여전히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이 선결조건이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받아 고세율의 관세와 함께 해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다시피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외국과 FTA 체결을 할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특례규정을 삽입하였다.

특히,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된 한·중 FTA에서는 지금까지의 역대 FTA중에서 가장 많은 310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

고 있다. 한·EU FTA는 267개 품목을, 한·인도 및 한·아세안이 각각 108개, 100개 품목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중 FTA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과 수송비까지 합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한·중 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제외하여 역외가공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에 대하여 한·중 FTA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대중국 수출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섬유 및 의류 분야는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아서 관세철폐 시 저가제품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일반기계 분야는 공작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중소형 생활가전 분야도 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들 업종에 대해 개성공단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산 인정대상인 310개 품목 중 주로 섬유제품과 전자 및 기계 부품이 한·중 FTA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거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교두보가 확보되어 개성공단은 다시 한 번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제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성공단 제품의 브랜드개발이다. 즉, 개성공단 제품 브랜드의 필요성이 높은 섬유, 가죽, 가방, 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평가나 인증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마련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중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체별로 FTA 핵심 전담인력을 두어서, FTA 전문인재로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에 모처럼 찾아온 한·중 FTA에 따른 제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아래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군사적 요인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성공단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손상되고, 입주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성공단의 성장을 위해 외국 투자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첨단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제안하였다.

셋째, 개성공단의 향후 첨단·고부가가치 공업단지로의 육성을 위하여, 현재 1단계 개발에 멈춰 있는 개성공단을 개발 초기에 제시된 2~3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자재를 보관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기능도 가능하게 하여, 개성공단의 판로개척은 물론,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물류기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임을 감안하여 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한 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별 맞춤형 FTA 컨설팅은 물론, FTA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기업들과 일자리까

지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지난 2015년 6월 1일 체결한 한·중 FTA 협정문 규정을 분석하여, 현재 기존 FTA에서 규정한 개성공단 의 한국산 인정방식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개성공단 제품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통계 등은 한·중 FTA 발효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발효 이후의 실질적으로 나타난 무역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한·중 FTA가 발효 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한·중 FTA가 개성공단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5, 한중FTA 설명자료
- 관세청, 2015년 4월호, FTA TRADE REPORT
- 관세청, 2015, 한-중 FTA 100문 100답
- 관세청, 2015, 한중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 강민규, 2013, 한미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김군태, 2013, 개성공단의 현황과 남북교류협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준환, 2008, 한-미 FTA원산지 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진규, 2007, FTA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개성공단제품 수출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나승권 등, 2014,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박변순 등, 2011, 한중 FTA의의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근, 2007,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자료
- 손광주 등, 2013, 개성공단 10년의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
- 이건여, 2013, 한중 FTA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영달, 2013,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 이은미, 2007, 개성공단 의류봉제산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창우 등, 2007, 개성공단 제품 FTA 시장 수출전략 연구
- 정홍열, 2011, 경제통합론, 해남
- 장경호,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전군중, 2011, 한중 FTA 협상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1, 개성공단제품 FTA 원산지제도 안내

최남석, 2015,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동북 3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2008, 개성공단 5년

통일부, 2008, 개성공단제품 FTA 체결 국가별 수출시장 개척방안

통일부, 2015, 통일백서

_____, 201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무역협회, 2014, Trade Focus Vol.13

_____, 2012, U- turn to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방안

_____, 2014,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현대경제연구원

HAO YING WEI, 2013,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 인터넷 웹사이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dmac.com>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포털 <http://okfta.kita.net>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foti.or.kr/>

